

지긋지긋한 시설비리 · 인권유린

공익이사제로

싹
싹
바꿉시다

매형,
화이팅!

내 뜻도
챙겨야지

여봉, 힘내!
끝까지 베터야지~!

아빠 다음은
나야~

복지시설은 내꺼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이잖아!

시설
민주화!

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라!

성남재단 비리 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62-5 1층 / 전화 02) 794-0395~6 / 전송 02) 6008-5530

www.sadd.or.kr

민주노동당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성남재단 비리 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지긋지긋한 시설비리 · 인권유린
공익이사회로 쌩
바꿉시다.

나온날 : 2007년 4월

펴낸곳 : 성립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펴낸이 : 문성현 · 김성재 · 박영희 · 조영권 · 최용기 · 흥승하

디자인 : 젊은기획 02) 2264-2015

· 민주노동당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2가 25-1 총도빌딩 / 전화 02) 2139-7777 / 전송 02) 2139-7890 / www.kdip.org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3 한국스카우트연맹회관 3층 / 전화 02) 783-0067 / 전송 02) 783-0069 / www.kodaf.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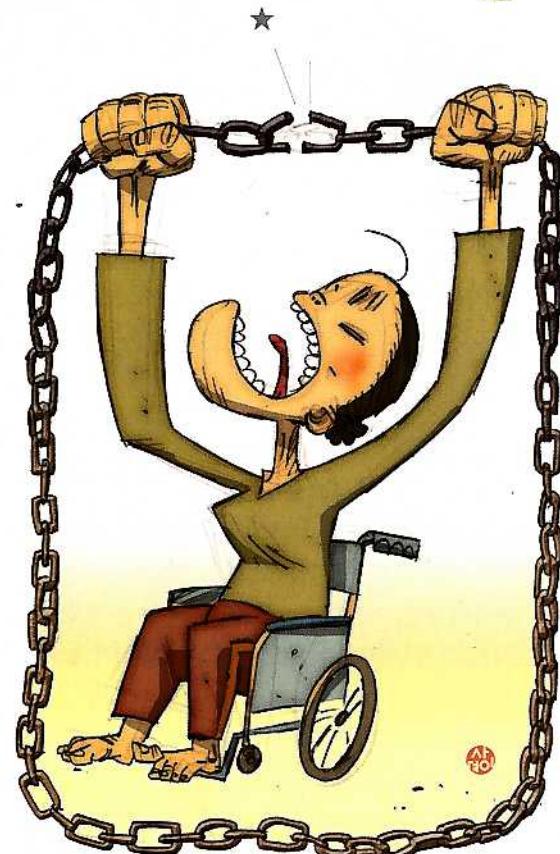
· 성립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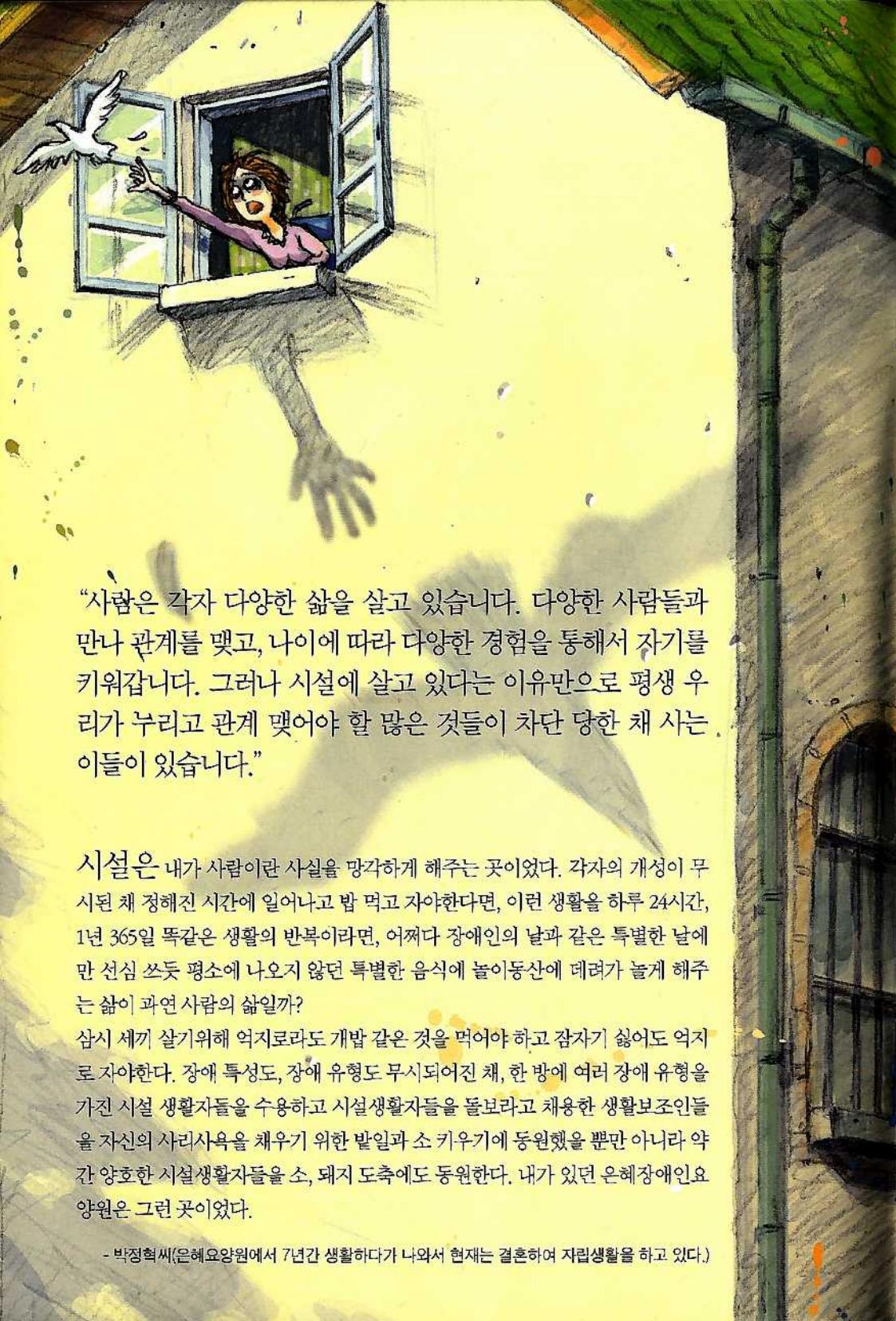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62-5 1층 / 전화 02) 794-0395-6 / 전송 02) 6008-5530 / www.sadd.or.kr

지긋지긋한 시설비리 · 인권유린

공익이사회로

쌩
바꿉시다





“사람은 각자 다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관계를 맺고, 나이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키워갑니다. 그러나 시설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우리가 누리고 관계 맺어야 할 많은 것들이 차단 당한 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시설은 내가 사람이란 사실을 망각하게 해주는 곳이었다. 각자의 개성이 무시된 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밥 먹고 자야한다면, 이런 생활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똑같은 생활의 반복이라면, 어쩌다 장애인의 날과 같은 특별한 날에 만 선심 쓰듯 평소에 나오지 않던 특별한 음식에 놀이동산에 데려가 놀게 해주는 삶이 과연 사람의 삶일까?

삼시 세끼 살기위해 억지로라도 개밥 같은 것을 먹어야 하고 잠자기 싫어도 억지로 자야한다. 장애 특성도, 장애 유형도 무시되어진 채, 한 방에 여러 장애 유형을 가진 시설 생활자들을 수용하고 시설생활자들을 돌보라고 채용한 생활보조인들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밭일과 소 키우기에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약간 양호한 시설생활자들을 소, 돼지 도축에도 동원한다. 내가 있던 은혜장애인요양원은 그런 곳이었다.

- 박정혁씨(은혜요양원에서 7년간 생활하다가 나와서 현재는 결혼하여 자립생활을 하고 있다.)

글 순서

지긋지긋한 시설비리 · 인권유린

싹
공익이사회로 바꿉시다.

1. 사회복지사업법이 뭐예요?

- 사회복지시설 개념 및 현황
- 사회복지법인 개념 및 현황
- 사회복지사업법 소개 및 개정의 필요성

2. 시설 생활인들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사례
- 시설생활인 인권확보 방안

3.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비리는 이제 그만!

- 복지시설 회계부정 사례
-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

4. 사회복지시설의 주인은 누구?

- 복지시설 족벌운영, 비민주적 운영 사례
- 공공성, 민주성 확보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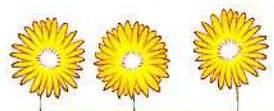
5. 내가 시설에 살아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 탈시설 · 자립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6.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비교

- 주요내용
- 개정안 비교

7. Q & A



01

사회복지사업법 소개

사회복지사업법이 뭐예요?

• 사회복지시설 개념 및 현황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이용방법에 따라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분류됩니다. 생활시설은 보호대상자가 입소하여 시설 내에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복지시설을 말하며, 이용시설은 복지관, 복지회관 등 이용자가 지역사회 내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여가활동, 재활 등을 위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2005년 12월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이용시설은 58,345개(이 중 경로당이 5만 3천개에 달함)이며, 생활시설은 2,262개로 총 10만여 명이 생활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용대상자에 따라서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결핵·한센시설 등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이 대표적 유형에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 2005년 12월 기준]

시설종류	계		생활시설			이용시설	
	개소	종사원	개소	종사원	입소인원	개소	종사원
노인복지	55,936	20,642	1,133	15,147	37,919	54,803	5,495
장애인복지	1,719	17,895	426	9,772	22,202	1,293	8,123
아동복지	1,958	9,551	536	5,360	20,716	1,422	4,191
사회복지관	391	7,650	-	-	-	391	7,650
기타	603	4,967	167	2,846	22,661	436	2,121
계	60,607	60,705	2,262	33,125	103,498	58,345	27,580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2005년 12월 기준]

시설종류	개소	이용(입소)인원	비 고
보육시설	28,367	1,221,006	이용시설
모부자시설	40	2,654	생활시설
성·가정폭력 피해자보호	63	928	생활시설
계	28,470	1,224,588	

• 사회복지법인 개념 및 현황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설립목적에 따라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으로 나뉘는데, 그 중 시설법인수는 1,642개(2006년 1월 기준)이며, 시설법인이 운영하는 산하시설에 대한 정부의 총 지원액은 1조 1,375억원(2005년 기준)에 달합니다.

○ 시설법인 수 : 1,699개

○ 산하시설에 대한 총 지원액('05년) : 1조 1,375억원

(단위: 억원)

신하시설수	국고보조금 지원액								
	총합계	0~2	2~5	5~10	10~30	30~50	50~100	100~	
총 계	1,699	95	603	460	226	250	40	18	7
1개	1,145	80	550	379	90	46	0	0	0
2개	249	11	35	57	81	64	1	0	0
3-4개	161	2	13	21	43	77	4	1	0
5-9개	95	1	4	3	12	47	23	3	2
10-19개	31	1	1	0	0	13	8	6	2
20-29개	14	0	0	0	0	3	3	6	2
30개 이상	4	0	0	0	0	0	1	2	1

※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시설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의 대부분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 사립학교의 경우 전문대 1.3%, 대학 1.8% 국고보조(교육인적자원부 자료)

※ 출처: 보건복지부 2007년 1월 23일자 보도자료.

• 사회복지사업법 소개 및 개정의 필요성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1월 1일 제정되었으며, 그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국가와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민간의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이 중심이 되어 왔으며, 현재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이 있었는데, 이는 1996년 발생한 에바다농아원 사태로 인해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 투명화에 대한 요구가 폭증하면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이때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책임 권한의 강화, 사회복지 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권리 용호,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등이 일정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복지시설 운영권이 국가가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에 있는 반면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대부분이 친족이나 지인에 의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불법 사례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수 자생적 정화 기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사회의 폐쇄적 운영구조는 누군가가 불법적 운영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적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그동안 문제가 일어났던 비리 시설들의 공통점을 보면, 시설 운영권을 쥐고 있는 법인 이사회가 친족이나 지인에 의해 구성된 폐쇄적 구조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고보조금 횡령 등 각종 불법들이 은폐되고 되풀이 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이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반강제적으로 생활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제노역, 구타 등 신체적 가해, 성폭력, 굶김, 약물투여, 종교탄압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쉽게 노출되면서도 문제제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사회복지생활시설 운

영자는 이를 이용해 각종 비리는 물론이거니와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사회복지시설 내에서는 벌성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민간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운영비는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한해 동안 법인 산하 시설에 대한 국가의 총 지원액은 1조 1,375억 원에 달합니다. 즉 사회복지시설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법인이 가지고 있는 공공적 성격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지난 2006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고, 2006년 12월에는 국가청렴위원회가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미 공익이사제도 도입의 설례도 있습니다. 인권침해, 회계부정 등 문제가 있었던 에바다복지회, 청암재단의 경우 기존의 비리이사가 퇴진되고 민주적 이사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며, 이사 및 감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그 공공성을 다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만들어졌습니다.

시설생활인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사례

사회복지시설은 혼자서 또는 가족과 함께 살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거뿐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건들을 제공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복지시설은 국가의 이러한 책무를 대행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복지시설이 '인권침해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양지마을 사건, 쏘적새마을, 유부도섬 사건, 에바다, 성실정양원, 은혜사랑의집, 정선믿음집, 바울선교원, 지인언어치료원, 청암재단 사건, 성람재단, 광주 인화학교, 충북양로원 사건. 셀 수도 없는 많은 사건들이 복지시설의 인권침해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에바다복지회

1996년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에바다복지회는 농아인 생활자들을 인신매매, 폭행, 성폭력, 감금하고, 사망한 장애인을 신고하지 않고 생계비를 타먹거나 한명을 이중으로 신고하여 횡령하는 등 4억여만원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 청암재단

2004년 청암재단은 재단의 돈벌이수단으로 가축사육에 장애인들을 동원해 차마 사람이 살수 없는 막사에 머물게하면서 강제노동을 시키고, 생활인들의 생계비를 횡령하여 3억원이 넘는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 성람재단

2006년 성람재단은 이사장의 개인농장에 장애인과 직원을 동원하여 강제노동을 시키고, 장애인들에게 차마 먹을 수 없는 밥을 주고 난방조차 해주지 않아 12년동안 249명이나 사망케 하고, 맘씨를 부린다면 폭행하여 사망케 한후 이를 감추려다가 적발되는 등 수많은 인권침해를 저질렀으며 9억 5천만원의 국고횡령과 112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다.

○ 광주인화학교

2005년 이사장의 둘째아들인 광주인화학교 행정실장은 청각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수년 동안 성폭력을 자행해 처벌받았으면서도 행정실장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또다시 성폭력을 저질렀고, 학교장인 첫째아들도 현재 성폭력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이러한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법인 및 학교운영진들은 침묵해 왔다.

○ 이외에도

미신고시설이었던 바울선교원, 지인언어치료원, 충남 온혜사랑의집, 양평성실정양원, 김포사랑의집 등 수많은 시설들에서 인권침해가 벌어졌다.



"시설은 본래 지역사회와의 자립생활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이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종신수용소'처럼 회소의 자유조차 없는 곳이 많습니다. 더욱이 이들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인 폭력(폭행과 감금, 학대)이 일어나고 이러한 인권침해를 감추기 위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권리(외출, 면회, 전화, 편지 등)마저도 박탈하기 일쑤입니다."

시설생활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서는 시설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원의 해임명령 조건 및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의 요건 중에 인권침해 규정을 추가하였고, 생활시설의 입퇴소권을 보장하였으며, 시설이용자의 권리와 명시하였으며, 시설평가 시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반영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제도를 두었습니다.

• 생활인 인권보장

제34조의5(시설이용자의 권리)

시설이용자는 자유롭게 시설을 선택할 권리,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종교와 사상의 자유, 이의를 제기할 권리, 외부인과 소통할 권리, 참정권, 재산권 등을 가진다.



• 처벌규정 강화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인권침해행위나 현저한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

제35조(시설의 장)

②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등)

①보건복지부장관, 市·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3의2.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인권침해행위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03

복지시설의 회계투명성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비리는 이제 그만!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시설이 개인 및 집단에 의해 사유화되고 이로 인해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보조금 횡령 및 후원금에 대한 각종 비리는 복지시설 운영의 돈줄이 비밀리에 각종 이권과 얹혀 사회복지시설이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비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구조를 만들어야만 복지시설 전체의 투명한 운영도 가능합니다.



복지시설의 회계부정 사례

• 정부보조금의 불법수령 및 횡령 사례

- 생활 인원수를 허위로 신고하여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후 횡령
 - 부산시 ○○○ 사회복지시설은 '99.2월~' 04.2월까지 노숙자쉼터 및 보육시설 수용인원 허위계상 등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2억4천여만원을 지급받아 횡령('04.11.12, 청렴위신고)
- 직원수 부풀리기 등 인건비 과다신고로 보조금 부정수령 후 편취
 - 부산시 ○○○ 어린이집 원장은 '03.3월~' 03.12월까지 보육교사 인원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3천 1백여만원을 수령한 후 편취('04.1.14, 청렴위신고)
- 법인 이사장이 국가·지자체로부터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을 횡령
 - 10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서울시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은 보조금 9억 5천여만원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3년, 벌금 3억원에 집행유예 4년 선고('06.9.15, KBS 등)
- 입소자 위로금을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
 - ○○○ 아동복지시설은 '02년~' 04년 입소자 위로금 6백3십여만원을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의류구입비 등으로 사용('04.3, 보건복지부감사)
- 회계 관련서류를 조작하여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
 - 서울시 ○○○ 복지관은 '00년~' 03년 기자재 구입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여 2억 8백여만원을 부당인출 후 부채상환 및 타 용도로 사용('03.3.8, 청렴위신고)

• 기능보강사업 청탁 및 위법한 공사계약 체결 사례

- 기능보강사업 선정을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제공하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으로 공사를 발주
 - 서울시 ○○○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은 전 서울시의원에게 시설보강사업 청탁 등의 대가로 2억 4천여만원을 뇌물로 지급('06.10.20,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고합196, ※ 현재 항소심 진행 중)
 - ○○○ 부랑인시설은 '03년 기능보강사업비 1억 8천만원, 전기공사 8천여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04.3, 보건복지부감사)

• 후원금 횡령 및 목적외 사용 사례

- 접수받은 후원금을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횡령하거나
관공비, 정보비 등 목적외 사용
 - 경남 ○○○노인시설은 후원금 2백여만원을 대표이사 개인 부채이자 상환으로 사용 ('05.12.19, 경남도지도점검)
 - ○○○장애인시설은 '02년도 후원금 9백여만원을 법인의 관공비 및 정보비로 사용('04.3, 보건복지부감사)

• 기본재산 불법처분 및 부실관리 사례

- 건물신축 기능보강사업 등 국고지원으로 형성된
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 임의처분
 - ○○○아동시설은 대지 5,476㎡에 대한 4,131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후, '02년이후 주무관청으로부터 6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미조치('04.3, 보건복지부감사)
 - 대구시 ○○○복지재단은 기본재산에 대한 104억원 근저당 설정, 기능보강사업비 부당집행 등 불법 특혜의혹 관련건으로 지역주민 400여명이 정부에 주민감사를 청구('05.10.26, 한겨례 등)
- 법인 취득재산에 대한 편입누락, 정관 미변경, 승인누락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부실관리
 - ○○○장애인시설은 '01년 신축건물(594㎡)을 '04년 현재까지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고 정관 변경 등을 누락('04.3, 보건복지부감사)

사회복지법인의
각종 회계비리와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이 다음이 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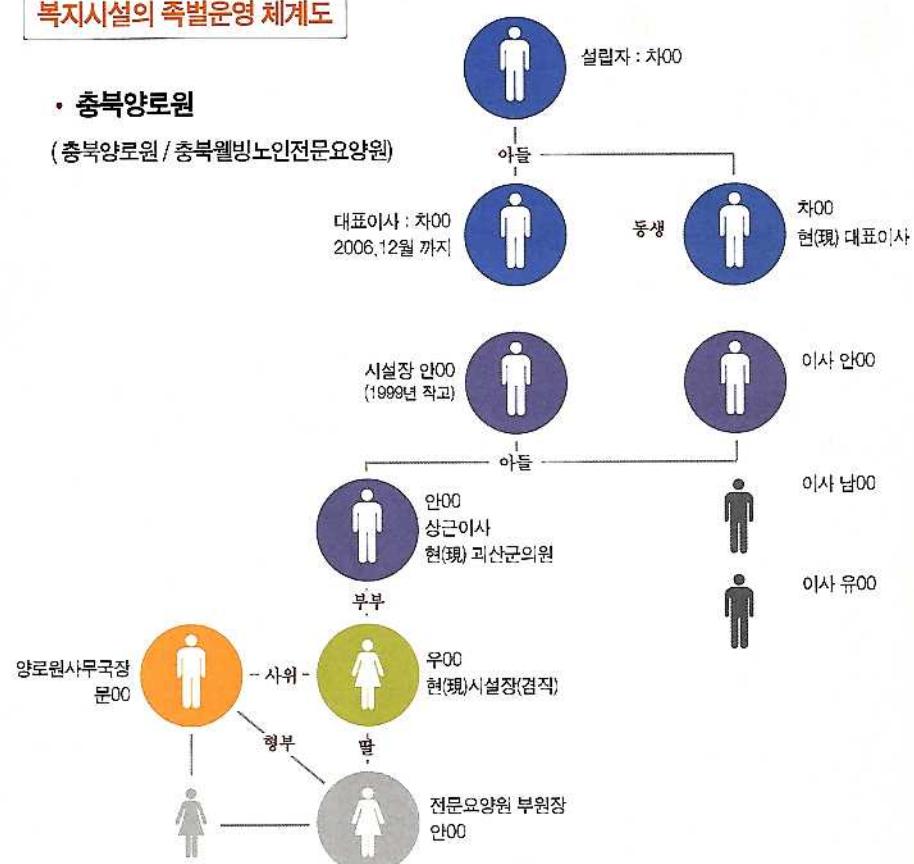
○ 사회 회의록, 법인 회계 및 감사결과, 대표이사의 재산상황 공개	제22조의2제1항, 2항, 3항, 5항
○ 임원의 해임 및 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회계부정 첨가	제 22조 제 2호, 제 4의 2~4~5호, 제2항
○ 운영위원회 기능에 시설의 예산 및 결산 심의 기능 추가	제36조제1항제1의2호
○ 개인신고시설 재산 취득시 편입조치 및 변동사항 해당관청에 보고 의무 추가	제37조제2항
○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리, 폐쇄 요건에 회계부정 첨가	제40조제1항제3의2호
○ 후원금 외부 공개 및 관리의 명확성 확보	제45조제1항

사회복지시설의 주인은 누구?

복지시설 족벌운영, 비민주적 운영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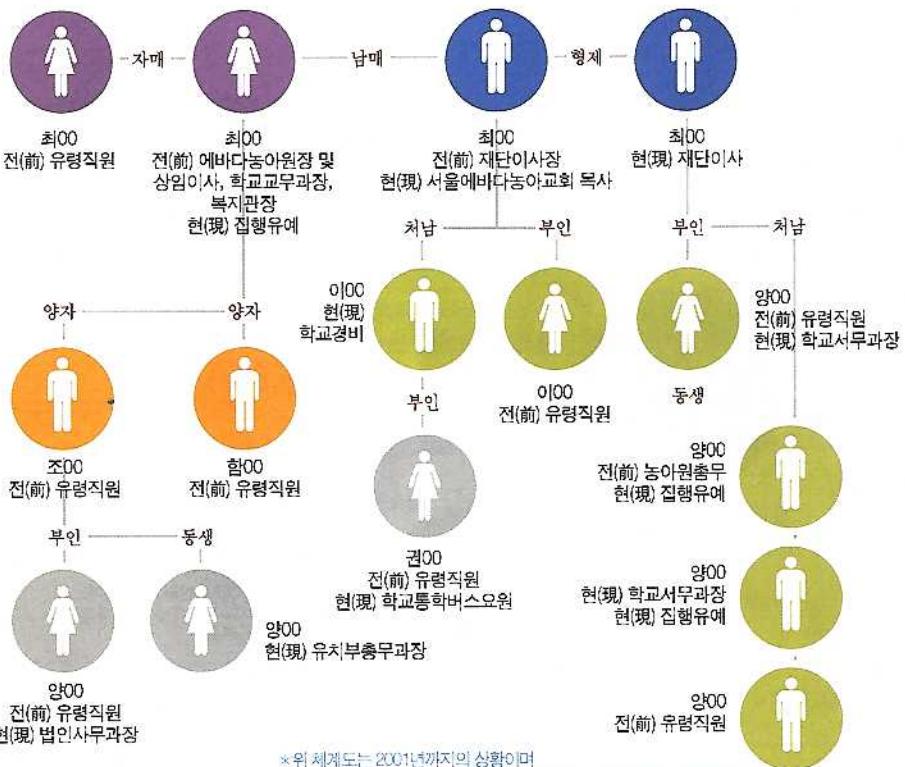
사회복지시설은 최초의 설립자와 그 가족에 의해 대대로 세습되고 사유화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최고 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설립자 가족 및 그의 지인들로 구성되고 이들에 의해 복지시설의 운영이 좌우됩니다. 공공의 사회복지시설이 개인 및 특정집단에 의해 사유화 되고 그로 인해 복지시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복지시설의 운영구조를 민주적인 구조로 만들어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복지시설의 족벌운영 체계도



구(久) 에바다복지회

지난 1996년 11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에바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재단측의 농아인 생활자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3억7천여만원에 이르는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했다. 그로인해 3명의 이사가 평택시에 의하여 해임되었고, 2명의 관선이사가 선임되었다. 해임된 이사 중 형사처벌을 받은 이사는 1명뿐이었지만, 행정감독청은 이사회의 책임을 물어 이사들을 해임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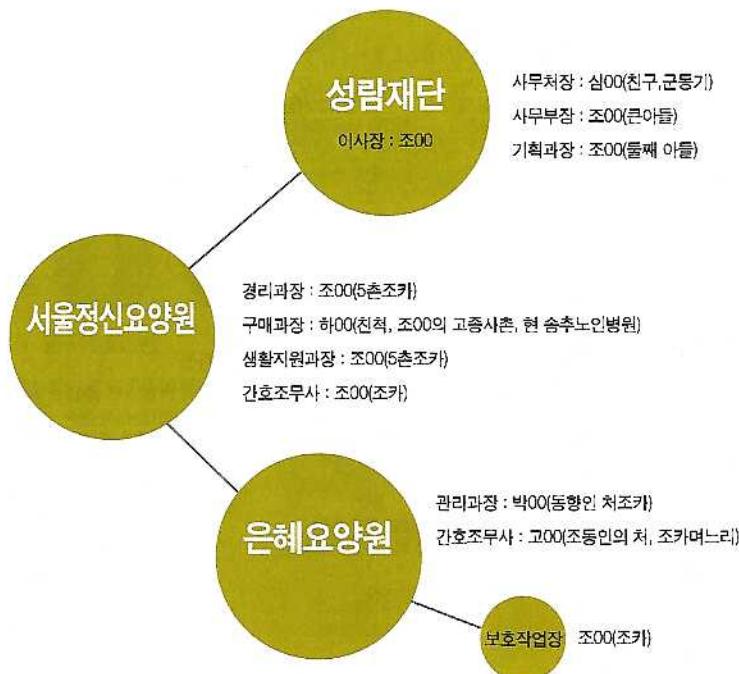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에서 운영하는 최초의 장애인이용시설 정립회관에서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이자 정립회관 관장인 이OO는 이사직 40년, 관장직 11년을 하고도 모자라 정립회관 관장으로 장기집권하여 시설을 사유하기 위해 중증장애인과 노동자에게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폭력만행을 저질렀다. 이후 관할감독관청의 중재로 관장직에서 물러나기로 약속한 이OO는 자신이 속한 이사회를 통해 이사장으로 승진하고 폭력책임자 백OO를 관장으로 선임하여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자신들만을 위한 이사회 권한을 행사하였다. 현재 관할 광진구청은 모든 것이 이사회와의 권한이고 자신들은 아무 권한이나 책임이 없음만을 강조하고 있다.

• 성립재단

성립재단 조OO 이사장은 장애인을 팔아 국가세금을 횡령하여 27억원이라는 돈을 사유재산 축척의 도구로 활용한 혐의로 현재 2심재판중이며, 특별감사까지 진행되어 비리이사들은 해임되었다. 그러나 비리에 연루된 이사들이 해임되기 전, 자신의 축군들을 새 이사로 삼아놓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성립재단은 조씨일가의 손아귀에 있는 상황으로 2006년 5월 조00 이사장만 구속되면서 교체되었고 나머지구성원은 전혀 변동되지 않았다.



• 우석재단

우석재단이 운영하는 인화학교(청각장애학교)와 인화원에서 청각장애아동과 청소녀들이 이사장의 아들(학교행정실장)에 의해 수십차례 성폭력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형편없는 교육과정에 놓여있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를 벌여, 성폭력가해자를 고발하고 우석재단의 문제에 책임이 있는 이사 전원에 대해 해임조치 및 공익이사 도입을 광주시 광산구청에 권고하였으나 우석재단측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이를 불복하여 여전히 법인과 시설 운영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민주적이고 폐쇄적 운영구조를 바꾸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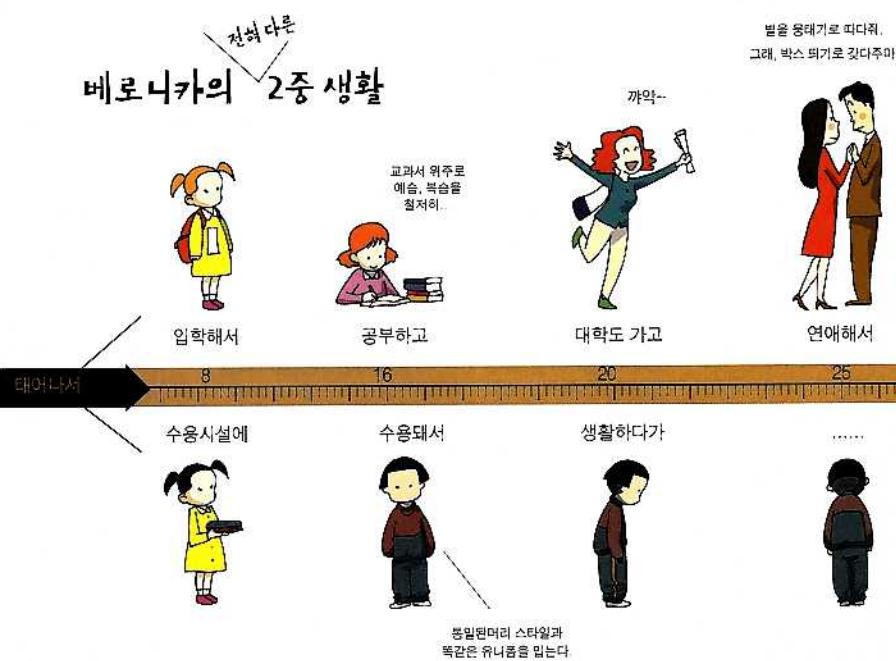
•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민주성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공성 원칙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원칙 확인	제1조의2
공익이사제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운영위원회가 추천	제18조제2,3항
문제법인 정상화	문제법인의 경우 새로운 이사 선임시 이사 정수의 2분의 1 이상을 운영위원회가 추천	제20조의 제2항, 3항
운영위 임명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임시이사 선임 및 해임권 부여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한 감사 1인 추천	제20조 / 제20조의 2 / 제20조의 3 제18조제5,6항
시설평가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시설 평가시 입소정원의 적정성, 시설종사자의 전문성, 환경, 서비스 만족도, 이용자 인권, 회계 관리, 법인 전입금 비율 등을 포함	제36조제4항 제43조제3항
시설운영의 투명성	복지관련 5급 이상 공무원 퇴직 후 법인 임원 5년 동안 금지	제19조제1항제3호
시설운영의 독립성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의 인사, 재정, 사업 등에 관한 독립권 보장	제22조의2제4항
운영위 구성원 강화 및 지역사회 개방성	운영위원회 구성 명시-이용자 및 종사자 대표 포함,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지역주민위원, 전문가위원 에 대한 추천권 부여	제36조제2항, 제3항, 제4항

내가 시설에 살아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여성 생활자들은 머리스타일도 직원 또는 교사 생각에 따라 좌우됩니다. 머리카락을 아무리 기르고 싶어도 교사를 편리할 대로만 하기 때문에 스스로 손질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쉽게 다 잘라 버립니다. 여자이고 사람인데 머리를 기르고도 싶고 예쁘게 변화도 주고 싶어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머리를 쉽게 자른 스타일 외에는 선택권이 없을 때, 여자로서 그것처럼 마음 아픈 게 없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이것도 하나의 작은 인권을 빼앗기는 결과라고 봅니다. 글쎄요. 시설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인권침해까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스스로 개성을 살리고 싶고 한참 몇 부리고 싶은 사춘기 시절에도 머리모양도 마음대로 못 해보고 몇십 년을 짧은 머리스타일로만 살아야하는 것도 인권이 무시당하는 거라고 봅니다.

- 우선미씨(현재 광주지역의 자립생활센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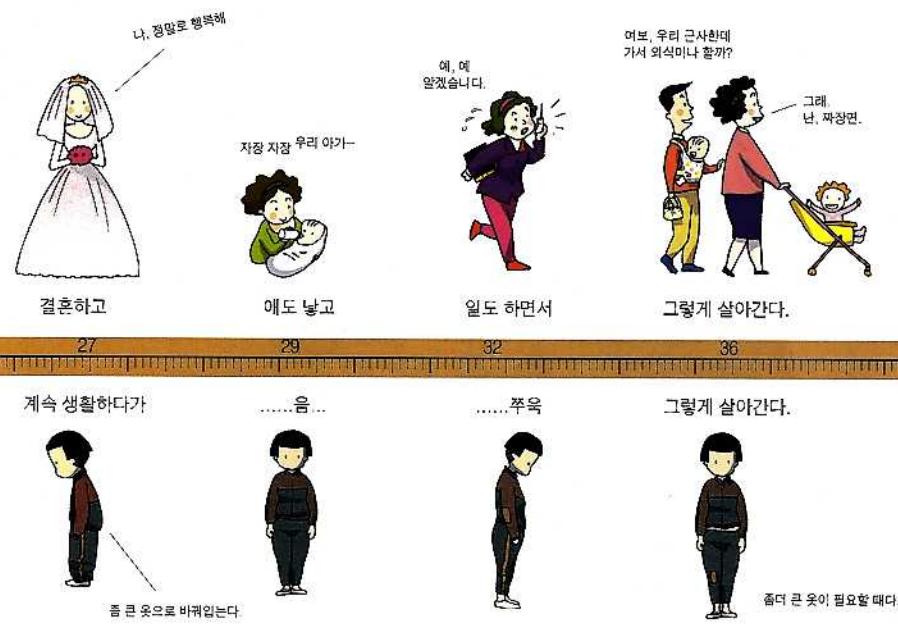


열아홉 살 때 친구가 바깥에 나가보자 그래서 교회에 나갔는데, 그게 처음으로 바깥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씩 교회에 갔는데 바깥에 나가는 게 목적이었고, 6개월 동안 그렇게 다니다가 거기 있는 목사님이 장애인끼리 있는 공동체를 소개해줘서 그 시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집에 있으면서 햇빛을 전혀 못 받고 살았고, 기껏 나가봤자 1년에 5월 5일 어린이날이나 그런 때, 1년에 한두번씩 멀리 나가보고, 그렇지 않으면 방에만 있었고, 하루 종일 라디오 듣고 TV 보는 게 나의 일과였습니다.

거기는 경기도 의정부쪽 산골짜기라서 사람들 만날 수도 없고 가끔씩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척, 교회에서 한 달에 한번 씩 아줌마들 학생들 와서 왔다갔다했는데, 학생들이 바깥에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 그렇구나 하고 그때 나가봐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은 들었지만 그때는 전동휠체어가 없었고 수동휠체어로 겨우겨우 다녔는데, 몇 년 지나서 갑자기 전동휠체어가 생겼고 그래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 이규식씨(현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샤워할 시간

미국의 한 정신지체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이
처음으로 뉴욕 거리에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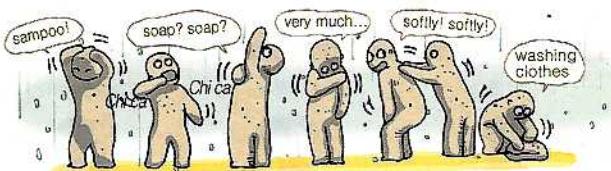
거리를 돌아보던 중,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비를 본 장애인들이 불현듯 옷을 벗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은 옷이 젖을까봐 벗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그들은 천정(=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은
곧 샤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평생 시설에서만 생활하던 그들은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는 경우를 시설내 샤워실에서 말고는 본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평생 시설에 살수는 없습니다.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해 한발한발 나아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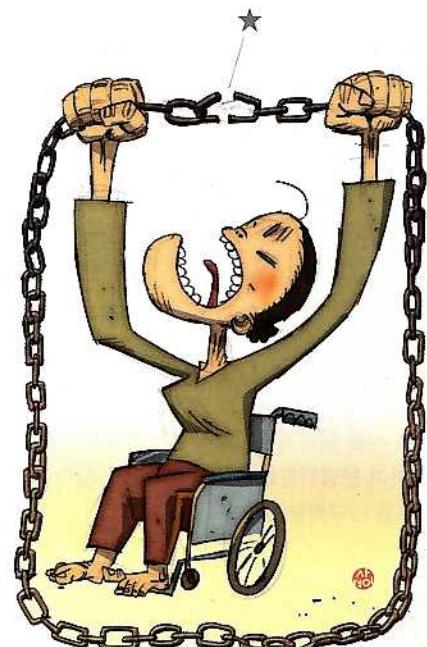
사회복지사업에 기본이념을 명시하여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서비스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재가복지서비스 우선의 원칙을 통해 생활시설에의 거주는 최후의 선택이 되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확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함을 명시했습니다.

제1조의2(기본이념)

②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다른 서비스로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회복지생활시설에 거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빠사!

인간답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첫째,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 쉽게 침해당하기 쉬운 시설 이용자에 대한 권리를 법에 명시하여 시설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기본이념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서비스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재가복지서비스 우선의 원칙을 통하여 탈시설을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확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했습니다.
 - 현재 시설 입퇴소에 있어서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여, 시설 입소자는 평생 감금되다 시피 시설에 거주하게 되거나, 혹은 시설에서 나가라고 하면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퇴소 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설의 입퇴소에 있어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체를 도입했습니다.
 - 시설 입소 시 본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하여, 퇴소의 자유를 명문화 하고, 시설의 입·퇴소 기준 및 절차, 설치·운영 및 최소 서비스 기준 등을 정하여 입퇴소 과정에서의 생활인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 정부에서 실시하는 시설 평가 및 계획에서도 인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둘째,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이사회가 대부분 친족과 지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폐쇄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시설 운영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각종 인권침해는 물론 회계부정 등의 사건이 발생되어도 사건은 쉽게 은폐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이사 정수 3분의 1을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해, 시설 및 복지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했습니다.

셋째, 시설 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성과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 종전에 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종사자 대표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상위법으로 옮겨 구성기준을 의무화했습니다.

- 현재 시설장에게 있는 운영위원 추천권을 폐지하여 시설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했습니다.
 - 운영위원회는 시설장, 시설이용자대표, 종사자대표,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공익단체추천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게 했습니다. 시설이용자대표와 종사자대표는 해당 구성원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게 했으며, 지역주민과 전문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 운영위원회 기능에 예결산 심의 기능을 추가하여, 사업과 예결산 심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보강했습니다.

넷째, 시설장 및 이사회의 자격요건을 강화했습니다.

- 결탁구조를 방지하기 위해 5급 이상의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게 했으며, 임원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인권침해, 기타 불법 혹은 부당행위 등을 행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형사처벌받은 자에 대해서도 시설장이 될 수 없도록 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및 시설의 운영, 특히 회계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 이사회 회의록과 재정관련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한 운영을 유도했으며, 대표이사 및 그 가족의 재산과 그 변동상황을 공개하도록 하여 부정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게 했습니다.
 - 개인운영시설의 경우 장부 등 회계공개 의무가 주어져 있지 않고 회계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에 보고의무를 의무화했습니다.
 - 회계부정이 쉽게 이루어지는 후원금의 관리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여 그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정부의 시설 평가에서도 회계 관리 부분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민주노동당, 정부, 국가청렴위안 비교

구분	인권보장				시설 운영의 공공성				및 민주성 확보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시설생활인에 대한 인권보장				공익이사제(개방형이사제)			운영위원회	강화		시설장 및 임원기준 강화			문제법인에 대한 조치	운영 투명성 (회계 등)	
	탈시설 원칙	입퇴소권	이의 신청 절차	기타	도입여부	추천권한	공익 이사수	구성	기능	기준	임원결격 사유	임원 해임 사유				
민주노동당 개정안	탈시설 원칙 기본이념 에 신설 이용자 본 인이 퇴소 선택	시설과 이용자간 입소계약 체결 이용자의 이의신청 절차 보장 이용자 본 인이 퇴소 선택	시설평가 에 인권에 관한 사항 추가, 시설 이용자의 권리 조항 신설 등	○	시설 운영 위원회[지 역사회복 지협의체 에 일부 추 천권 부여]	이사의 3분의 1 이상	기준 시행규칙을 법 으로 규정 기준 구성원에 시설 종사자 대표, 공익단 체 추천인 추가 기준 시설장 추천권 한 삭제	예결산 심의 기능 추가	5급 이상의 관련 공무 원으로 퇴 직한 지 5 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추가	시설장 제한 및 시설 폐쇄 시유에 인권침해 행위 및 부당노동행위 추가	인권침해, 부당노동 행위 추가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추가 감사 1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임	이사회 회의록 및 회계 및 감사 결과 공개 대표이사 본인과 가족의 재산상황 공개	후원금 관리 내역 공개	시설 평가 기준에 회계 관리, 법인 전입금 비율 포함	개인운영시설의 재산취 득보고 의무화
정부안				○	시도 사회복지 위원회	이사의 4분의 1 이상	기준 시행규칙을 법 으로 규정 기준 구성원에 시설 종사자 대표 추가 기준 시설장 추천권 한 삭제	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 심의 기능 추가 감사 기능 강화 추가	이사의 3분의 1을 3년 이상 사회 복지 유경험자, 감사 2인 중 1인 법률 회계 전문가 로 임명 추가 감사 기능 강화 추가	6급 이상의 관련 공무 원으로 퇴 직한 지 2 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추가	설립허가 등기 후 3월 이내 재산출연하지 않는 경우 허 가 취소 문제가 있을 때는 감사 중 전 부 또는 일부 관할관청에서 추천 가능 관할관청이 임시 이사 선임 불법에 대해 조사 중이거나 해임명령 기간 중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조항 신설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	감사는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 이사회와 관할관청에 보고			
국가청렴위안 개정안				○	개방형 이사제 도입의 세부기준 마련 권고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를 일정비율 이상 포함하여 위촉	후원금 조성 및 집행 관련 사항, 예결산 등에 관한 심의 기능 확대 운영비 신청 및 집행관련 사항, 시설운영에 관련된 이사회 의결사항 보고 기능 추가	특별관계에 있는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권 행사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구체적으로 정비 감사 기능 강화 추가		임시이사 파견제 근거 규정 마련	보조금 및 후원금 집행 투명성 평가 반영 기능보강사업 집행체계개선 보조금 및 인력관리감독 시스템의 효율적 개선 감사의 실질적 기능 강화 외부회계감사 등 검증장치마련 기본재산의 엄격한 관리체계 구축				

1. 사회복지법인은 민간법인인데,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가 아닌가요?

사회복지법인은 일반 비영리법인이나 영리법인과 달리, 공익적 목적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성격은 사(私)법인이면서 비영리 재단법인이며, 공익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적 기능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간 국고는 2조 6천억원에 달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생활시설의 경우 80%, 이용시설의 경우 70% 이상을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인 전입금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시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사회복지법인과 비슷한 문제와 구조를 지닌 사립학교법인에 대해서도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한 바 있으며, 영리법인인 회사에도 '사외이사' 제도가 있습니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34조 사회보장수급권, 헌법 제37조에 따르면, 공익이사제 도입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사회권 보장과 시장 경제질서의 보장은 서로 대치되는 조항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조항이며,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제 도입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함께 나누는 제도입니다.

2. 공익이사제 도입은 일부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전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 대해 부도덕하다고 몰고 가는 것 이 아닌가요?

사회복지법인에서 발생하는 국고보조금 횡령 등과 같은 회계 부정 사건, 시설 이용자 및 생활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해 전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국민 불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지원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사회복지의 확대 또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익이사제를 도입함으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익이사제 도입은 시설 비리가 발생한 이후 대처하는 사후 처방이 아니라, 시설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비리가 생겨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 혹은 비리가 발생했을 때 사회복지법인 자체적으로 이를 정화시켜 낼 수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3. 대표이사 및 그 가족까지 재산 공개를 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 가 아닌가요?

현재 공무원을 포함해서 국회의원이나 기초의원들까지도 본인은 물론 가족의 재산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범법자라서가 아닙니다. 사회적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사회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책임지겠다는 것이고,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국민들 앞에서 심판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개정안은 대표이사에 대해서만 가족까지 재산공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익적 성격을 가진 시설 운영자들이 양심적 재산 공개를 통해, 시설 회계비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없애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4.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라는 것은 결국 시설을 계속 확대하자는 것이 아닌가요?

사회서비스 이용자는 대규모 시설에 분리 수용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규모 생활시설이 인권유린적일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직시하고, 소규모이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 내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는 높은 반면, 사회복지시설 서비스를 비롯하여 재가서비스에 대한 공급 수준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재가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시설을 없애라고 하면, 시설 서비스 이용자가 지역사회 내에 그대로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시설의 폐쇄적 운영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시설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수많은 인권침해적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개정안은 탈시설 원칙을 밝히면서도, 단계적으로 현재 시설에 입소해 있는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기본이념을 신설하여 탈시설 원칙을 규정하고, 시설 이용자가 강제로 시설에 입소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으며, 시설 내 인권침해적 상황과 불법 행위들이 근절되도록 법안을 정비했습니다.